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가. 발 의 자: 박춘선 의원 외 31명

나. 의안번호: 제1846호

다. 발의일자: 2024. 5. 27.

라. 회부일자: 2024. 5. 30.

2. 제 안 사 유

- 수상활동의 촉진 및 다양화 등을 위하여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의 중요성 또한 높아졌기에 수상 레저시설과 운영자 관련 사항을 이에 맞춰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운영자의 의무 관련 사항을 신설함과 동시에 상위법 개정에 맞춰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상위법 근거 조항을 수정함(안 제4조제1항, 안 제6조제1항).

나. 수상레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탁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다. 수상레저시설 운영 시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신설).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강 내 수상레저활동 확대 등에 따라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이에 맞춰 수상레저시설 운영 및 운영자 안전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임.

나. 세부 검토 의견

- 안 제8조제2항은 수상레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수상레저시설의 경우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시설의 운영 경험과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¹⁾에 근거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당 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음.

- 안 제9조는 수상레저시설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수상레저활동 시 사고 발생은 유속이 빠르고 수심이 깊은 한강 특성상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안전장비 착용, 무면허조종 금지 등 상위법인 「수상레저안전법」 제3장 안전준수의무 규정을 따라야 하며, 관련 사항은 현행 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음.

다만, 현행 조례에는 수상레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실질적인 책무가 있는 시설 운영자에 관한 사항은 누락되어 있는바, 운영자의 주의의무,

1)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공원이용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안전점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더욱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그 밖에 안 제4조제1항과 제6조제1항의 경우, 상위법 개정예 따라 그 근거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의견은 없음.